

# 서 면 답 변 서

질의 위원	이경진 위원	소 속	평창군 의회
답 변 자	평 창 군 수 (환경복지과장)	일 자	질의: 2001. 12. 4 답변: 2001. 12. 5(10:00)
회 의	제9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감사활동 2일차)		
<p><b>【 질 의 요 지 】</b>                  평창군청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에 대한 고용계획</p>			
<p><b>【 답변요지 】</b></p> <p><input type="checkbox"/> 이경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군 장애인 고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제23조의 규정에서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라고, 동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율은 100분의 2로 되어 있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평창군청 정원은 517명으로 규정에 의하면 11명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나 행정사무의 특성상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자격조건을 갖춘 자(임용시험 합격자 등)로 신규임용의 자격자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장애인고용비율의 확보만을 위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향후, 조직관리부서와 장애인의 임용을 위한 협의를 통하여 최대한의 개선책 협의를 하겠으나 장애인고용만을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